

# 부천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규정 개정 사전예고

## 1. 개정 이유

- 가. 현행 「부천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규정」에 따르면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권의 양도가 제한적으로 가능하나, 해당 사유를 강화하고자 함.
- 나. 2022년 부천시 종합감사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으로 불연재 사용에 대해 상위법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있는 규정을 완화시켜 개정하고자함.

## 2. 주요 개정 내용

- 가. 「부천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규정」 제2장제10조2항(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의 제한)  
임차권의 양도 사유 중 ‘임차인의 사망 외 3개 사유’를, ‘임차인의 사망 단일 사유’로 변경함.
- 나. 「부천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규정」 제18조(불연재료의 사용)  
‘반드시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방염대상물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로 일부 개정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천도시공사 공공사업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주소 : 부천시 부천로 1-1(심곡동) 부천도시공사 공공사업부 공공시설팀
- 이메일 : ouknam@nate.com
- 팩스 : 032-662-8681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사업부 공공시설팀(전화 032-340-53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의 제한)</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u> 이 규정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차권 양도 승인원을 제출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차인의 사망</li> <li>2. 국외 및 수도권 이외의 지방으로 이주</li> <li>3.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정상영업 불가능</li> <li>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제10조(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의 제한)</p> <p>② -----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p> <p>-----</p> <p>-----</p> <p>-----</p> <p>1. ~ 4. &lt;삭제&gt;</p>
<p>제18조(불연재료의 사용) 지하도상가 내에 사용하는 모든 내·외장용 시설과 간판, 안내판 및 광고판 등에는 <u>반드시 불연재료를 사용하여</u>야 한다.</p>	<p>제18조(불연재료의 사용) -----</p> <p>-----</p> <p>-----</p> <p>-- <u>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방염대상물품</u>-----</p>